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4월 4일
- 회부일자 : 2011년 4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·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
-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제5조(감사) 삭제

5. 검토의견

-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2010. 7. 1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